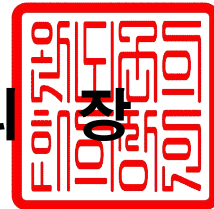


## 완도군 119 나르미션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완도군 119 나르미션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」  
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  
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 
조례안을 예고합니다.

2024년 2월 28일

완 도 군 의 회 의 장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발 의 자 : 지민 의원

3. 제정이유

- 완도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운영되는 119 나르미션 지원  
범위를 확대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함.

#### 4. 주요내용

-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(안 제5조 제2항)
  - 휴일운항 지원 확대(별표2 수정)

#### 5. 관련법령 : -

6. 조례안 예고기간 : 2024. 2. 28. ~ 2024. 3. 5.

#### 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· 주소 ·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  
(전화: 061-550-5935, FAX: 061-550-5907)

##### 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 · 전화 · 팩스 · 직접방문 등

## 8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(전화: 061-550-593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  
2. 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 1부.

#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안 예고명	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견 제출자	성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
	주소		

## 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

「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 
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출 자

(서명 또는 인)

완도군의회 의장 귀하

# 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붙임1

## 원안

[별표 2]

### 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기준(인건비)

구 분	인 건 비								비 고 (인건비 산정기준)
	가 군		나 군		다 군		라 군		
	대 상 지역	소요 시간 (왕복)	대 상 지역	소요 시간 (왕복)	대 상 지역	소요 시간 (왕복)	대 상 지역	소요 시간 (왕복)	
주간 운항 (1회당)	금일,노화 군외,신지 고금,청산 소안,금당 보길,생일	5시간 이내	금일 (황제,원도) 청산 (여서)	6시간 이내	없음	7	없음	12	정부고시 도서 특별인부 임금기준 적용
야간 운항 (1회당)	주간운항의 2배								

비고)

1. 소요시간(왕복)이 3시간 미만인 경우 3시간으로 계산 지급
2. 도서 특별인부 임금의 시간당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

## 붙임2

## 개정안

[별표 2]

### 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기준(인건비)

구 분	인 건 비								비 고 (인건비 산정기준)
	가 군		나 군		다 군		라 군		
	대 상 지 역	소요 시간 (왕복)	대 상 지 역	소요 시간 (왕복)	대 상 지 역	소요 시간 (왕복)	대 상 지 역	소요 시간 (왕복)	
주간 운항 (1회당)	금일,노화 군외,신지 고금,청산 소안,금당 보길,생일	5시간 이내	금일 (황제,원도) 청산 (여서)	6시간 이내	없음	7	없음	12	정부고시 도서 특별인부 임금기준 적용
야간 및 휴일 운항 (1회당)	주간운항의 2배 및 휴일 운항 시 2배								

비고)

1. 소요시간(왕복)이 3시간 미만인 경우 3시간으로 계산 지급
2. 도서 특별인부 임금의 시간당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